

## [2016 건축기사 4주완성 2차 정오표] [2016.2.29]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비 고
[법규] 760	6. 건축물의 높이제한	☞ 하단참조	②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내용과 그림 삭제
	핵심PLUS [예]1	~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경우	최고 삭제
	핵심PLUS [예]2	삭제	문제 삭제
761	그림 위 [예외] 수정	☞ 하단참조	

## ☞ 하단참조 내용

☞ 건축 교재 760쪽

### 6.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높이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단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 ㉠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 ㉡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 ㉢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 ㉣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 ㉤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 절차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②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 건축 교재 761쪽

### [예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중점경관관리구역(경관법)
- ㉢ 특별가로구역(건축법)
-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2016 건축기사 4주완성 1차 정오표] [2016.2.11]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비 고
[법규] 67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93	다중이용건축물 정의... 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동·식물원)	①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전시장 삭제
693	신설 추가	준다중이용건축물 ⇨ 하단참조	법 신설(정의)
704	[표]속 [예외]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건설기술진흥법	
705	[표]속 좌측 4. 추가	4.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	법 개정(대상 추가)
708	[표]속 2.점검대상에 추가	·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법 개정(대상 추가)
712	14번 해설 중...	①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전시장 삭제
716	25번 해설 [표]속 4. 추가	4.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	법 개정(대상 추가)
724	[표]속 2. 연면적: 1,000㎡	연면적 : 500㎡	법 개정(※500㎡ 주의)
728	3)배연설비	⇨ 하단참조	법 개정(대상 추가)
729	[표]속 최하단에 한줄 추가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호실간 경계벽 ⇨ 하단참조	법 개정(대상 추가)
738	6.[표]속 옥상광장의설치..유흥주점	유흥주점 → 주점영업	
764	3)배연설비	⇨ 하단참조	법 개정(대상 추가)
771	[표]속	⇨ 하단참조 · 준다중이용건축물	법 개정(대상 추가)
774	13번 해설..배연설비	⇨ 하단참조	법 개정(대상 추가)
781	2. ※모니터링 대상 지정권자..	기타건축물:2년마다→4년마다	
781	핵심PLUS [예]2	⇨ 하단참조	
790	[표] 수정	⇨ 하단참조	내용 수정
829	[표] 속...용도지구명:방재지구	*방재지구	세분대상 *표기추가
834	㉚ 입지규제최소구역.. 추가	⇨ 하단참조	내용 추가
[부록]	과년도기출 법규문제 중 구조안전확인 대상	연면적 1,000㎡ → 500㎡ 으로 수정	법 개정(※500㎡ 주의)

위의 내용 이외에 의문점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 [www.inup.co.kr](http://www.inup.co.kr) 건축기사4주완성 동영상강좌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하단참조 내용

[건축법규 개정, 신설사항에 유의하여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693p 신설 (내용추가)

### ※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 728p, 764p, 774p 수정부분(동일)

### 3) 배연설비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것의 거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예외] 피난층인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예외] 피난층인 경우

☞ 729p 수정부분

### ① 경계벽 및 칸막이벽 구조

대상 건축물의 용도	구획 부분	구조 제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가구주택</li> <li>• 공동주택(기숙사 제외)</li> </ul>	각 가구간 또는 세대간의 경계벽 (발코니 부분은 제외)	차음구조 및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교실</li> <li>• 의료시설의 병실</li> <li>• 숙박시설의 객실</li> <li>• 기숙사의 침실</li> </ul>	각 거실간의 칸막이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li> </ul>	호실 간 칸막이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li> </ul>	세대 간 경계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li> </ul>	호실 간 경계벽	

☞ 771p 수정부분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협력사항
건축구조기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층 이상 건축물</li> <li>• 특수구조 건축물</li> <li>• 다중이용 건축물</li> <li>• <b>준다중이용 건축물</b></li> <li>• 지진구역의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li> </ul>	구조안전의 확인

☞ 781p 수정부분

[예] 특별건축구역 안의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 제출기간은?(단,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까지의 경우**)

- 가.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미만**이다
- 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미만**이다
- 다. **사용승인일로부터 4년 미만**이다
- 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이다

답 : 라

☞ 790p 수정부분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직

구 분	설 치	분쟁조정업무의 범위	위원의 수	임 기
(중앙)삭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15인 이내 (위원장·위원장 각 1명 포함)	3년 (공무원 제외)

☞ 834p 부분(내용추가)

**7** 입지규제최소구역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3.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내용

- ①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②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 ③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 ④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⑤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 ⑥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